

3.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 미 동반 하는 경우

‘부모 미 동반 소아 입국 규정’에 의거 구비서류 준비 후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



- ※ 서류 관련 상세 내용은 이용하실 공증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.
- ① 공증받은 서류를 광화문 외교부 별관 영사에게 확인 요청 : 건당 500원 수수료
- ② 영사 확인을 마친 서류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 후 자격 취득 : 건당 34,000원 수수료

입국 수수료(3,120페소)는 현재 필리핀 시장단과 면제조치 협의 중입니다.
여권사본을 아래 기간까지 보내주신 분에 한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후로는 면제가 되지 않으니 아래 일정에 맞춰
join.iro.korea@gmail.com으로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대회 1차 신청자	10월 14일 까지
세계대회 2차 신청자	11월 07일 까지

영문 주민등록등본 관련 안내

영문 등본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.
** 추가 증빙?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영문 번역/공증

[영문 주민등록등본 증명 불가 대표 사례]



등본과 여권상의
영문 스펠이 다른 경우

등본상 관계 표기가
부모자녀가 아닌
'동거인'으로 나온 경우

부모자녀의 주소가 달라
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
관계 증명이 불가한 경우

가족관계증명서 및 공증 관련 안내

[가족관계 증명서]

1.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 불가/국문본만 발급 가능합니다.
2. 증명서 발급 이후 공증사무실을 통한 번역, 공증 절차 필요합니다.
3. 기타 사유에 의해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관계 증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[변호사 공증]

1. 공증 절차 진행은 여행동의서에 자필 서명할 법적 보호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.
2. 인솔자 혹은 법적보호자가 아닌 경우 공증 진행이 불가하거나 공증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3. 공증 진행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업체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개별 확인 필요합니다.